



서 울 지 방 법 원

제 22 민사부

판 결

사 건 97가합32890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REDACTED]

변론 종결 1997. 11. 21.

주 문 1. 피고의 주주총회가 1997. 3. 7.에 한 별지목록기재의 결의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주주총회가 1997. 3. 7.에 한 별지목록기재의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걍 제1호증, 걍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4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REDACTED] [REDACTED] 의 각 증언(다만 증인 [REDACTED]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3. 7. 서울 종로구 [REDACTED] 피고의 본점건물 4층 강당에서 제11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제117기(1996. 1. 1. 부터 1996. 12. 31.까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정관변경을 각 승인하는 결의와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참석주주들은 위 주주총회를 시작하기 전 위 건물 1층 로비에서 참석장을 작성하였는데 참석장은 모두 342장이 작성되었으나, 실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약 230명 정도로서 참석장만을 작성한 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돌아간 주주들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는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출석한 주주들의 주식수를 다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참석장에 기초하여 114,494,730주(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주식수 74,278,082주, 참석장이 작성된 주식수 40,216,648주)가 출석주식수라고 하였다.

다. (1) 피고의 총발행주식은 164,000,000주이고 그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149,276,050주인데, 피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19%인 60,000,000주는 증권예탁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있고, 증권시장안정기금(총 보유주식은 11,473,684주이나 은행법 제17조의 3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6,560,000주로 제한된다)과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그 4.39%인 6,560,000주를, 소외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그 4.29%인 6,406,957주를, 소외 교보생명 주식회사가 그 2.64%인 3,938,614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상법이나 피고의 정관에 정한 보통결의의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인데, 위 출석주식수 114,494,730주를 기준으로 하면 그 50%인 57,247,365주가 결의 정족수가 된다.

(3) 증권예탁원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행사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 비율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증



권예탁원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 중 약 27,247,674주 [= 57,247,365 ÷ {1 +

60,000,000/(114,494,730 - 60,000,000)}]가 찬성하여야 결의를 할 수 있게 된다.

(4) 피고회사의 주주 중 주식 1,852,680주를 소유한 소외 씨엠비-씨에이피 알이 이엠
(CMB-CAP RE EM) 등 합계 4,152,160주(의결권 있는 주식의 약 2.7%)를 소유한 5개 회
사는 그 의결권 행사를 소외 홍콩은행에게 위임하면서 모든 의안에 찬성할 의사를 명시
하였다.

라. (1)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을 맡은 피고 은행장 직무대리 소외 [REDACTED] 이
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1호 의안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이의임
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을 동시에 상정하자는 일부 주주들의 요청이 있자 주주들의 의
견을 물었고, 이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많자 위 두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심의에 들어
갔다.

주주인 소외 [REDACTED] 이 1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재청
하는 주주가 있었다. 의장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는 주주들에게 답변을 하였고, 주주인
소외 [REDACTED] 가 2호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이에 여러 주주들이 재청, 동
의하였다. 다시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에 주주인 소외 [REDACTED] 가 질의는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에 하고 우선 위 각 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또 여러 명의 주주들이 이를
통과시키자고 소리치자 의장은 위 통과에 반대하며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일부 주주가



있음에도 주주들에게 찬성, 반대의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아무런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각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였다. 의장이 위 의안의 통과를 선포하자 박수를 치는 주주들이 많았다.

(2) 의장은 3호 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위 [REDACTED] 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였다. 원안통과에 반대하여 발언권을 요구하는 주주와 4호 안건을 상정하라고 소리치는 주주가 있는 가운데 의장은 주주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한 주들에게 찬성, 반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3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선포하였다. 그러자 박수를 치는 주주들이 많았고, 한편 발언권을 주지 않고 통과시킨 것에 항의하는 주주도 있었다. 의장은 위 통과선포 후에야 발언권을 구하는 주주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3) 의장은 4호 의안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였고, 개정된 은행법 및 위 3호 의안으로 변경된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 13명, 상임이사 6명,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한 후 주주들에게 선임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주주인 소외 [REDACTED] 는 의장이 제청하는 복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였고, 이에 의장은 소외 [REDACTED] 등 20명의 이름만을 열거하는 방법에 의하여 적임자를 제청하였다.

의장은 “좋습니다”라고 하며 박수치는 주주들과 위 의안통과에 반대하여 발언권을 구하는 주주들이 있는 가운데 주주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지 않고 또한 주주들에게 찬



성, 반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명된 소외인들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
다고 선포하였다. 의장은 위 통과선포 후에야 발언권을 구하는 주주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마. 이 사건 주주총회장 내에는 출석한 주주의 신분과 그 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예컨대 좌석표시, 주식수계시, 명찰 등이 일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
건 주주총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건물 1층 로비에서 참석장을 작성한 외에는 4
층 강당에서 행해진 주주총회에 실제로 출석한 사람이 주주인지 여부, 당해 의안에 대하
여 동의, 재청하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주주들이 소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식수, 주주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소지 여부,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출석하였는지 여부에 대
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주주인지 여부,
당해 참석자의 주주권의 수, 주주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소지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가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주주인지 알 수 없고, 출석주식수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
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상법 제380조에서 정한 결의무효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할 것을



이유로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총회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부존재 또는 결의취소의 원인에 해당할 뿐 결의무효의 원인이라 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는 참석장만 작성하고 돌아간 주주들을 간과 하여 출석주식수를 잘못 계산하고, 표결절차 기타 찬반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채 의안의 통과만을 선포한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주들의 동의, 재청, 이를 지지하는 다수 주주들의 찬성이 의결 정족수를 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장이 의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것이 대규모 주식 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의 표결에 관한 일반화된 관례인데, 이 사건 결의도 이러한 관례에 따른 것이고, 대주주 및 대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하였으므로 거수, 기립, 기명 등의 표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으며, 반대하는 주주 들의 의결권수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수에 비하여 극히 미약하여 의결의 결과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주주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방식 및 결의의 방식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의 정관에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의체의 운영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총의, 즉 다수 주식 소유자의 의사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거수, 기립, 투표 등 표결절차가 필요하고 할 것이나 주식의 분표비율에 따라서는 주주의 이의여부만을 확인하거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다수 주주의 의사만을 확인하는 등 보다 간편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토의과정을 통하여 그 최종단계에 있어서 의안에 대한 각 주주의 확정적인 찬부의 태도가 자연적으로 분명해지고, 그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가 그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 달한 점이 명백해진다면 그 때에 있어서 표결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의장이 다시 그 의안에 대하여 주주에게 거수, 기립, 투표 등 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명시적인 표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아가 다른 형태로 그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가 그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 달한 점이 명백해졌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실제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



수가 확인되지 아니함으로써 정족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석주식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지 아니하였고, 위 3호, 4호 의안에 대하여는 토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의안에 대한 각 주주의 확정적인 찬부의 태도가 자연적으로 분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러 명의 주주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 재청하고, 이에 다수의 주주들이 동의하였으며, 의결권 있는 주식의 2.7%에 해당하는 일부 대주주는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모든 의안에 찬성할 것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수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그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가 그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 달한 점이 명백해졌다고 볼 수 없음에도(더욱이 출석주식수의 52.4%에 달하는 증권예탁원 명의 예탁주식 60,000,000주의 경우에는 그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 및 반대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위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명백하게 결의정족수에 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주주들에게 찬성, 반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주총회가 1997. 3. 7.에 한 이 사건 결의들을 각 취소한다.

다. 재량기각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가 경미하고, 위와 같은 하자가 결의의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79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취소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에 의한 소위 재량기각은, 결의에 사소한 하자가 있어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의의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가 취소된다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승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에 기하여 이미 이루어진 배당 등이 무효로 되고,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등 회사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점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주주에 의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가 불명확한 정도의 하자라면 이를 경미한 하자로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결의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면 피고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영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소수주주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잘못된 주주총회관행에 따라 의사진행을 소홀히 하여 중대한 결의사항을 표결 없이 졸속처리한데 따른 결과이므로 피고가 이 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대로 사실상 다수주주가 위 결의에 찬성하였던 것이



라면 다음의 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피고의 회사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소수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경영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잘못된 관행에 따른 형식적인 주주총회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운영방식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 또한 피고 등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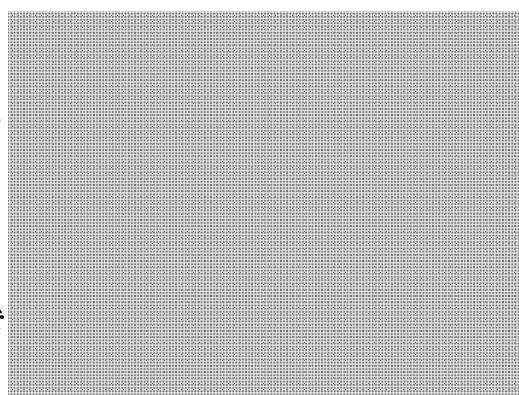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2.

재판장 판사 서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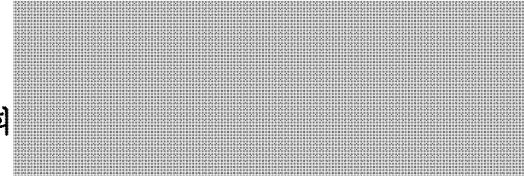
판사 정여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2015-11-02

판 사 조 양 회





주주총회의 결의

1. 제117기(1996. 1. 1. - 1996. 12. 3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결의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결의

3. 정관변경(안) 승인결의

4. 임기 1년의 비상임이사로 소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을,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로 소외 [REDACTED], [REDACTED] 를,

임기 3년의 상임이사로 소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를, 상임감사

로 소외 [REDACTED] 를 각 선임한 결의, 끝.